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2279
----------	-------

제안연월일 : 2023. 5.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사경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2020.11.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신영대의원	2021.3.25.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이용우의원	2021.5.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 회 직접 회부(21.9.8.)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유경준의원	2022.3.23.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2.9.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김한규의원	2023.5.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 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권성동의원	2023.5.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이해식의원	2023.5.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장혜영의원	2023.5.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김희곤의원	2023.5.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김성원의원	2023.5.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양금희의원	2023.5.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노용호의원	2023.5.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윤두현의원	2023.5.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김용판의원	2023.5.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이만희의원	2023.5.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3.5.1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3.5.22.) 상정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3.5.22.)는 위 1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3.5.24.)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현금, 예금, 증권(주식·채권 등) 등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의 2022년 하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19조원, 일평균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시 재산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 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6조의2, 제14조의17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주식거래의”를 “거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거래”로 한다.

제6조의4제2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를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p> <p>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u><신설></u></p> <p>④ ~ ⑦ (생략)</p> <p>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p> <p>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p>	<p>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p> <p>③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 -----</p>

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

② -----거래내역-----
-----거래의-----

③ -----거래-----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생략)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 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⑥ (생략)

<신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

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
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
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
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
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
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
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